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655

발의연월일: 2021. 7. 22.

발 의 자: 정청래·김남국·김승남

문진석 · 서영교 · 소병훈

오영환 • 이규민 • 조오섭

최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·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·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 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 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 정임.

이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저촉되지 않는 동물판매업·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, 상호, 전화번호,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반려동물 분양의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33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·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·등록·신고된 허가(등록)번호, 업체명, 전화번호, 소재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33조(영업의	등록) ①	~ ③	제33조(영업의 등록) ① ~ ③
(생 략)		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	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
			항ㆍ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
			따라 허가・등록・신고된 허가
			(등록)번호, 업체명, 전화번호,
			소재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④ (생략)		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